

의안번호	2200054
의 퇴 인	나경원의원
회 답 일	2024.8.20.
추 계 번호	24B049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 2 신설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금융지원)	국가는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 또는 주택 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대출(주택구입비 대출의 경우 상환기간이 20년인 경우에 한한다)할 경우 그 대출금리와 지원금리 간의 차액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 주택 취득일 또는 주택 임차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주택 취득일 또는 주택 임차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주택 취득 또는 주택 임차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제1항의 지원금리는 연리 1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의 한도는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함(제3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하고 일반대출로 전환함(제4항)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 또는 주택 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2.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무규정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함(제5항)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 또는 주택 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는 신혼부부가 제1항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항에 따른 출생신고일부터의 대출금의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의 원금을 지원함(제7항) 1. 2명인 경우: 원금의 3분의 1 2. 3명인 경우: 원금의 3분의 2 3. 4명 이상인 경우: 원금 전액	
		제7항에 따라 이자 및 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한도는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함(제8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과 제7항에 따른 이자 및 원금 지원사업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9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16조의2 신설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금융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안 제16조의2 신설) 개정안은 국가가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대출하는 경우 2억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한 이차보전 비용을 지원하고(제1항), 신혼부부가 대출금 상환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대출금의 한도가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의 원금을 차등 지원함(제7항)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그런데 현재 국가 지원 대상인 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이 대

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지원대상 부부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주택구입비 등을 대출한 신혼부부 중 2억원 이상 대출가구와 가구별 이자율 및 연간 이자액, 연도별 상환계획 및 상환기간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정부가 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리와의 대출금리간의 이차보전 비용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주택구입비 등을 대출한 신혼가구의 자녀출산예정시기 및 출산자녀 수, 출산자녀가 있는 가구의 대출원금 등의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출산자녀 수에 따른 대출금의 원금, 이자액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함

□ 국토교통부는 주택용자상품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상품에 가입한 신혼가구의 대출건수와 대출금액, 대출상품별 이자수입은 다음과 같으며, 신혼가구의 자녀수, 출생연도 등의 정보는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해당 비용소요를 추산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표 1]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대출상품의 연도별 이자수입

(단위: 건, 억원)

			‘20	‘21	‘22	‘23	‘24.5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실적	건수	17,520	21,862	16,573	31,637	16,350
		금액	25,171	33,396	29,038	75,647	40,578
	이자수입	금액	1,414	1,761	2,147	3,009	1,940
		평균이율	1.93%	1.86%	1.86%	1.75%	2.26%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실적	건수	29,667	18,479	22,975	33,149	14,087
		금액	27,916	17,505	26,274	48,577	21,195
	이자수입	금액	1,138	1,246	1,288	1,683	976
		평균이율	1.83%	1.79%	1.72%	1.75%	2.16%

주: * 평잔작성이 곤란한 HF, 하나은행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다만, 참고로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신혼부부의 89%가 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대출보유 가구의 40.2%가 2억원 이상이며, 대출잔액 중앙값은 1.6억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1.9억원, 주택미소유 가구의 대출금액은 1.4억원 수준임
- 그 밖의 신혼부부 및 자녀현황은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2] 2022년 초혼 신혼부부 특성별 대출잔액 분포

(단위: 쌍, %, 만원)

		대출보유 신혼부부 수 (쌍)	대출 보유 비율(%)	대출잔액 구간별 구성비(%)					대출잔 액 중앙값 (만원)
				5천만원 미만	5천~1 억원 미만	1억~2 억원 미만	2억~3 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체		725,949	89.0	15.8	14.3	29.6	20.0	20.2	16,417
경제활동	맞벌이	421,548	90.4	12.5	12.8	29.0	21.6	24.1	18,361
	외벌이	275,426	88.4	18.6	16.3	31.0	18.7	15.5	14,440
혼인연차	1년차	124,716	86.5	19.5	15.3	30.3	19.8	15.2	14,513
	2년차	131,490	89.0	15.8	14.6	31.1	19.5	19.0	16,068
	3년차	146,522	89.9	15.1	12.9	31.3	19.9	20.7	16,811
	4년차	156,839	89.7	14.7	14.9	28.1	20.6	21.7	17,000
	5년차	166,380	89.5	14.6	14.0	27.9	20.3	23.2	17,543
자녀	무자녀	334,279	88.3	17.3	14.5	30.8	20.2	17.3	15,650
	유자녀	391,669	89.7	14.5	14.2	28.7	19.9	22.8	17,242
주택소유	소유	300,232	90.9	10.0	12.3	29.6	21.2	26.9	19,313
	미소유	425,717	87.7	19.9	15.7	29.6	19.2	15.5	14,233

자료: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신혼부부통계 결과”, 2023.12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II.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박인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신혼부부통계

< 혼인연차별 신혼부부 수 현황 >

(단위: 쌍,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구성비	증감률
1년차	252,785	236,580	214,266	191,904	185,830	(180)	(-32)
2년차	252,564	247,187	230,637	209,466	187,683	(182)	(-104)
3년차	266,589	247,132	241,248	225,865	204,883	(198)	(-93)
4년차	272,771	261,425	241,544	236,827	221,351	(214)	(-65)
5년차	277,697	267,793	256,055	237,393	232,506	(225)	(-21)

자료: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신혼부부통계 결과”, 2023.12.

< ‘22년 초혼 신혼부부의 혼인연차별 자녀 현황 >

(단위: 쌍, 명, %)

		전체	자녀 없음	자녀 있음				평균 자녀 수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815,357	378,491	436,866	350,827	82,930	3,109	0.65
(구성비)		(100.0)	(46.4)	(53.6)	(43.0)	(10.2)	(0.4)	
혼인 연차	1년차	144,099	115,062	29,037	28,393	616	28	0.21
		(100.0)	(79.8)	(20.2)	(19.7)	(0.4)	(0.0)	
	2년차	147,685	88,386	59,299	56,865	2,365	69	0.42
		(100.0)	(59.8)	(40.2)	(38.5)	(1.6)	(0.0)	
	3년차	162,938	72,022	90,916	79,649	11,001	266	0.63
		(100.0)	(44.2)	(55.8)	(48.9)	(6.8)	(0.2)	
	4년차	174,802	57,160	117,642	91,319	25,611	712	0.83
		(100.0)	(32.7)	(67.3)	(52.2)	(14.7)	(0.4)	
	5년차	185,833	45,861	139,972	94,601	43,337	2,034	1.01
		(100.0)	(24.7)	(75.3)	(50.9)	(23.3)	(1.1)	

* 자녀 수는 아내 기준으로 혼인 신고 이전의 자녀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

자료: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신혼부부통계 결과”, 2023.12.